

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114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10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이만희 · 이현승

정태옥 · 지상욱 · 이명수

김성원 · 김정재 · 박명재

이채익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‘부득이한 사정’은 분쟁당사자의 개인 사정 등 분쟁 사안과 무관한 사유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는 적절한 표 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조정 기간 연장 시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‘부득이한 사정’을 ‘정당한 사유’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0조).

법률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2항 단서 중 “부득이한 사정이”를 “정당한 사유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0조(분쟁의 조정) ① (생 약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<u>부득이한 사정이</u>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60조(분쟁의 조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<u>정당한 사유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